

서울특별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6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9일 강희향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강희향 의원

가. 제안이유

관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CCTV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)
- 운영위원회 구성, 기능, 회의 및 수당(안 제5조 ~ 제8조)
- 비밀유지 규정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○ 동(同) 조례안은 2016.10.20.~10.24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·운영하고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, 기능, 회의 및 참석위원 수당을 규정하였고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규정하였으며, 현행 CCTV를 설치 대상으로는 구 관내에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, 담당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 설치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